: 2024. 09. 25. 16: 42 : : : 2025. 05. 15 11: 46

## 수 원 회 생 법 원

## 결 정

사 건 2024하단13732 파산선고

2024하면13732 면책

신 청 인 최병선

(채 무 자)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22, 203동 302호(백현동, 백현마을2단

지아파트)

## 주 문

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파산절차의 비용 500만 원을 미리납부하여야 한다.

## 이 유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※ 위 비용은 파산관재인 보수 등 파산절차비용으로 사용됩니다. 위 비용은 인지나 송 달료가 아닌 민사예납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, 이를 납부한 때에는 납부영수증을 법원 에 제출하기 바랍니다.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파산절차비용의 추가 납부를 명할 수 있 습니다.

2024. 9. 25.

판사 원운재

